

#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 정관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명칭)

이 법인은 ‘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’(이하 ‘법인’)라 한다.

### 제2조 (사무소)

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### 제3조 (목적)

법인은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연구 및 순교자들의 정신 현양을 통하여 한국 가톨릭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,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4조 (사업)

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교회사의 연구 및 연구 지원
2. 관계 자료의 수집 정리 번역 주해 및 연구, 출판
3. 연구지 기관지 발행 및 도서출판
4. 연구 발표회 및 특별 강좌의 개최
5. 교회사 및 천주교 관계 학문 연구자에 대한 장학사업
6. 순교자 현양과 관계된 사업
7. 그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임 원

### 제5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: 1인
2. 상임이사 : 1인
3.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 : 각 1인
4. 이사 : 10인 이상 20인 이내(이사장 및 상임이사·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)
5. 감사 : 2인(당연직 감사 1인을 포함한다)

### 제6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사무처장은 그 직책에 재임하는 동안 법인의 당연직 이사로,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관리국장은 그 직책에 재임하는 동안 법인의 당연직 감사로 선임된다.
-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### 제8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
-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
### 제9조 (상임이사)

- ① 법인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### 제10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 제11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- 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### 제12조 (이사장의 직무 대행)
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 제3장 이사회

### 제13조 (이사회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### 제14조 (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### 제15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- 2.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## 제16조 (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### 제17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### 제18조 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5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7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 제19조 (이사회결의결 제척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 제4장 재산과 회계

### 제20조 (재산의 구분)

-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1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‘별지 1’과 같다.
 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21조 (기본재산의 처분)

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·담보의 제공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### 제22조 (수입금)
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# **제23조 (회계연도)**
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**제24조 (예산편성)**

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# **제25조 (결산)**

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**제26조 (세계잉여금)**

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.

### **제27조 (회계감사)**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 **제5장 사무 부서**

### **제28조 (임원의 보수)**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29조 (사무국)

-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 제6장 보 칙

### 제30조 (법인해산)

-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 기증한다.

### 제31조 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32조 (업무보고)
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

### 제33조 (규칙 제정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정관은 199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정관은 2000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정관은 2002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정관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# 부 칙 (2006년 2월 일)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별지 1 : <기본재산목록> 수록 생략